

KISO

JOURNAL 2013 Vol.13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허위사실의 증명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특집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법제동향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 관한 가처분 사례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사이버불링 예방위해 함께 노력해야”
- 영국 Kidscape 부회장 인터뷰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이용자 섹션

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학술탐방

한국헌법학회 활동 소개

서평

“융합문명론”

KISO 뉴스

국내 주요 커뮤니티, KISO 회원 가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황승흠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Keyword〉

KISO, 공인, 심의결정, 임시조치, 정무직공무원, 정보통신망법, 정책 및 심의결정리뷰

1. 사안의 개요

전 국회의원이자 전 공기업사장이었던 A씨는 공기업사장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특별사면 된 사실에 관한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 B포털은 KISO의 내부규정에 따라 A씨가 “정무직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삭제요청을 반려하였다. 삭제요청 반려에 대해서 A씨는 KISO의 정책이 국가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의 상위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공기업의 장은 “정무직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KISO의 다른 회원사인 C포털이 게시물을 삭제해 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재차 삭제요청을 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서 B포털은 KISO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KISO는 A씨의 요청이 삭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유사 사안에 대해서 이미 삭제조치를 C 포털에 대해서는 게시물의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사안에 대해 행동강령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첫째 쟁점은 KISO의 회원사에 대해 게시물 삭제요청을 한 사안에 대하여 그 회원사가 KISO의 규약을 들어 삭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고, 둘째 쟁점은 만일 그

러하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내부규정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가이다. 셋째 쟁점은 KISO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회원사에 대해서 행동강령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첫째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그것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KISO는 “필요한 조치”의 프레임 안에서 존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쟁점은 단순하지는 않지만 법적용의 일반론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마지막 쟁점은 첫째 쟁점과 연결되는데 KISO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3. 정보통신망법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 조항의 개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는 정보의 삭제요청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제1항).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제2항 전단). “삭제, 임시조치 등”을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예시하여 삭제와 임시조치가 할 수 있는 필요조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절차적 관점에서 신청인 이외에 이해관계자인 정보게재자[정보제공자]에게도 조치사항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쉽게 삭제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정보제공자의 권익침해 문제 때문인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망법은 삭제절차를 임시조치와 종국조치의 2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항 전단). 임시조치는 비록 종국적인 삭제는 아니지만 피해의 확산 방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기간도 30일 이내(제4항 후단)인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30일은 상당한 기간이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나 삭제조치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제6항), 임시조치 및 삭제조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장치를 부가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조치를 한 이후에 종국적인 삭제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적어도 삭제나 임시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신에게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할 수 있는 것

제도적으로 볼 때 임시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임시조치가 발동되기 위한 요건의 이해는 간단하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먼저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 요청은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문제는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문의 문맥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삭제·임시조치 등은 필요한 조치의 예시규정이다. 삭제·임시조치가 대표적인 필요한 조치이겠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삭제·임시조치에 국한하지 않은 것은 사안별로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판단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삭제·임시조치가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이 아닐 수 있다.

게시물을 둘러싼 분쟁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정보게재자가 가해자이고 그 내용에 언급된 인물이 피해자인 경우이다. 이때는 삭제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정보게재자가 반드시 가해자인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은 비록 명예훼손과 유사한 외양을 갖더라도 공적 가치나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보게재자를 가해자로 보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는 삭제·임

시조치가 타당한 피해구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삭제·임시조치가 오히려 사회적 강자에 관한 문제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되어 분쟁—이 경우는 개인 피해라기보다는 사회적 분쟁이라 보는 것이 옳다.—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삭제·임시조치를 하지 않고 그 게시물을 그대로 두는 것도 사회분쟁의 확산을 오히려 막는 방안일 수 있다. 사회적 강자 역시도 명예훼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이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지 위한 판단의 조건들에 관한 것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필요한 조치는 삭제·임시조치가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를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조치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위의 사안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B 포털이 A씨의 요청에 대해 삭제요청을 반려한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필요한 조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포털은 신청반려, 다시 말해서 게시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조치를 필요한 조치로서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걱정했는가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B포털이 신청인에게 KISO 규정을 근거로 신청반려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A씨가 정보통신망법이 KISO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반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망법의 해석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이외에도 이를 하지 않는 필요한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차후에는 신청반려를 할 때 정보통신망법과 KISO 규정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KISO 규정도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법조항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야 하는 것

정보통신망법은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야 할 것으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는 것과 일반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삭제·임시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경우에 이와 같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삭제·임시조치를 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청반려도 필요한 조치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즉 신청반려 사실을 즉시 신청에게 알리는 한편 정보게재자에게도 알려야 하고, 일반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도 해야 한다. 정보게재자에게도 분쟁의 발생사실을 알리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이용자에게도 분쟁의 발생을 알려야 한다. 신청반려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바로 일반 이용자가 갖는 알 권리와 정보게재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신청반려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적용 타당성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KISO의 규정에는 게시물의 내용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관한 것에 해당하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는 필요한 조치 중에서 삭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요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공인”이라는 것이다. 정무직 공무원 등은 이의 예시일 뿐이다. 공인을 해석할 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그것의 표지로 본 것이고 공무원으로 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사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기업사장은 공적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KISO와 그 회원사인 B포털의 관계는 계약법적인 관계일 뿐이다. KISO와 B포털의 계약법적 관계는 B포털과 신청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B포털이 실제 판단은 KISO의 규정에 따라 했지만 신청인에게 KISO의 규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B포털은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한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권한에 따라 삭제 반력을 한 것이며

KISO의 규정은 하나의 판단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신청반력을 통보할 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과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로 KISO의 규정을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KISO 결정의 위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처음 입법될 당시에 이를 제안한 정부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의 삭제여부의 판단을 위한 자율분쟁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회심의에서 삭제되었다. KISO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은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KISO의 근거는 회원사와의 계약법적인 관계뿐이다.

KISO의 존립이유를 정보통신망법에서 찾아보면 제44조의2 제4항에 있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규정이다. 개개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대해서 일일이 정보의 삭제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에 이러한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 공동의 기구를 만들고—정보통신망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법적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여기에 판단을 대행하게 하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자율분쟁조정기구

를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포털이 모든 사안에서 대해서 KISO에 판단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KISO의 업무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느려져서 회원사의 업무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회원사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KISO의 결정은 회원사가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 1차 결정을 하여 심의요청을 하면 그 다음단계에서 이루어지는 2차 결정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포털에 게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삭제요청에 대한 어떤 포털은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떤 포털은 이 판단이 어렵다고 하여 KISO에 심의요청을 한 경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KISO의 역할은 회원사가 1차 판단을 한 이후에 작동하는 2차 판단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회원사가 한 필요한 조치와 KISO가 한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은 KISO의 존립이유이기도 하다.

KISO는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사의 판단을 대행하는 곳이다. 회원사는 KISO의 결정을 자신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다. 회원사는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동강령에 따른 제재를 한다. 보통은 벌금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제명조치도 할 수 있다. KISO의 행동강령은 제재조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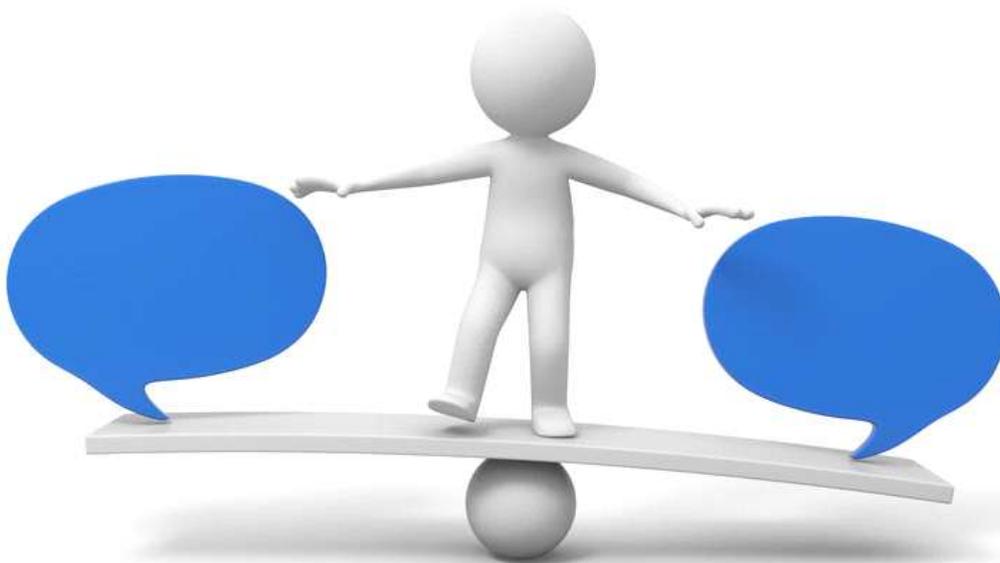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KISO의 결정이 있기 전에 회원사가 이미 어떤 조치를 하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KISO의 결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이다.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판단을 KISO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KISO의 판단을 요청한다. 어떤 회원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회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회원사는 삭제조치를 했는데 어떤 회원사는 삭제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KISO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KISO는 삭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이 결정은 이미 삭제조치를 한 경우와 충돌한다. 이 경우에 이미 삭제조치를 한 회원사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일까?

결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이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맡긴 이상은 이와 같이 서로 모순되는 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사업자 자율규제라는 것의 생명은 이와 같은

유연성과 소프트한 구조에 있다.

하지만 신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정보통신망법이 이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도 포털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당장은 제도의 취지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많은 KISO의 결정례가 축적

되는 것이 해결책이다. KISO의 결정례가 축적되어 이것이 보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되고 회원사는 업데이트된 행동강령을 준수해 나가면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결국 제도의 성숙이 이러한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을 치유해 줄 수 있다. KISO JOURNAL



허위사실의 증명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정경오 / KISDI 책임연구원, 변호사
KISO 정책위원,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장

〈Keyword〉

명예훼손, 소명, 심의결정,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증명, 허위사실

1. 서론

1) 대상 결정문의 요지

대상 결정문에 따르면, 구의원인 신청인이 회의장에서 여성 장애인 의원을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신청인은 위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이다.

신청인은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근거로 강제추행과 관련되어 검찰이 해당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불기소 이유고지서를 제출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토대

로 성추행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또 다른 내용인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게시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관련 내용보다 폭력 행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하였다(KISO 심의결정 2013심46).

2) 쟁점

대상 심의결정문과 관련해서 쟁점은 허위 사실의 소명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KISO 정책결정 제2호에 따르면, 명예훼손

손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소명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정보의 삭제 요청 시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¹⁾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 및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결과적으로 KISO 정책결정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소명을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소명책임 부담이 타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무직 공인에 해당하는 공인의 경우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는 허위사실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적시의 경우 임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며, 대상 심의결정문의 사례와 같이 게시물 중 일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부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 일부에 대해 임시조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임시조치 요청자의 허위사실 소명 책임의 타당성

1) 증명과 소명

증명과 소명은 주로 소송절차에서 사용되

는 법률 용어이다. 증명은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고, 소명은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의미한다. 즉, 증명이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한다면, 소명은 그보다는 낮은 개연성을 요구하므로 결과적으로 증명과 소명은 법관에게 확신을 주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립당사자 구조와 증명책임

판단을 하는 법관이나 심판관을 중심으로 원고-피고, 신청인-피신청인처럼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대립당사자구조 또는 대심구조라고 한다.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제도나 행정기관이 심판자가 되어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심판 제도 등이 대표적인 대립당사자 구조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립당사자 구조인 소송에서는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사실을 증명한다. 따라서 대립당사자 구조에서는 증명과 소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증명과 소명에 대한 책임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상 이하에서 ‘증명책임’으로 표현한다)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소송이나 심판의 승패가 갈리는데,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패소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²⁾ 즉, 증명책임이란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해 보았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 패소위험을 의미하고, 이러한 요증사실의 진위여부가 불명한 경우에 당사자 중 누구에게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의 문제가 증명책임의 분배의 문제이다.

민사소송에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나 범의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³⁾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판례는 “원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고 한다.

3) 소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대립당사자인 검사와 피의자를 보았을 때 검사에게 있다. 소송절차가 아닌 KISO 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는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증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소명으로 충분하다. 다만, 소명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는 자가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임을 소명해야 할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명예훼손이 아님 즉, 진실성과 공익성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증명책임의 분배상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점이 「정보통신망법」의 삭제요청 시 침해사실의 소명책임 및 KISO 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소명책임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은 대립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1. 제446면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증명책임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명)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3) 이시윤(2003) 제448면; 민사소송에서는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인 법률요건분류설이 있으며,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고,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은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에는 권리장애규정, 권리멸각규정, 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이 있다.

3. 사실과 허위사실이 동시에 존재한 경우 임시조치 여부

1) 사실 적시의 경우 임시조치 제외의 타당성

KISO 정책결정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위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ISO는 사실 적시의 경우에 임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KISO의 이러한 정책결정이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KISO가 이러한 정책결정을 한 이유에는 먼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보장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책비판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정책비판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KISO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ISO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를 임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와 그 동안의 판례를 근거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책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일부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

위 대상 심의결정문과 같이 일부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사실은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게시물 전체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시조치는 게시물 전체를 하나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분만의 임시조치는 생각할 수 없다.

이 경우 게시물을 계량화하여 명예훼손성 내용이 50% 이상이면 게시물 전체를 임시조치하고, 50%미만이면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게시물 중 일부만 남

기고 일부만 임시조치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 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는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거나⁴⁾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⁵⁾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명예훼손 게시물의 경우 일부 무죄, 일부 유죄와 같이 일부만의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으며, 게시물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문제되는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임시조치 여부는 게시물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전체를 대

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상 심의결정문은 일부만 임시조치를 하지 않고, 게시물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KISO 정책결정 제2호에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은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허위사실에 대한 소명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판단자인 KISO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대립 당사자 구조를 고려하면, 허위사실에 대한 소명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5) 판례에 따르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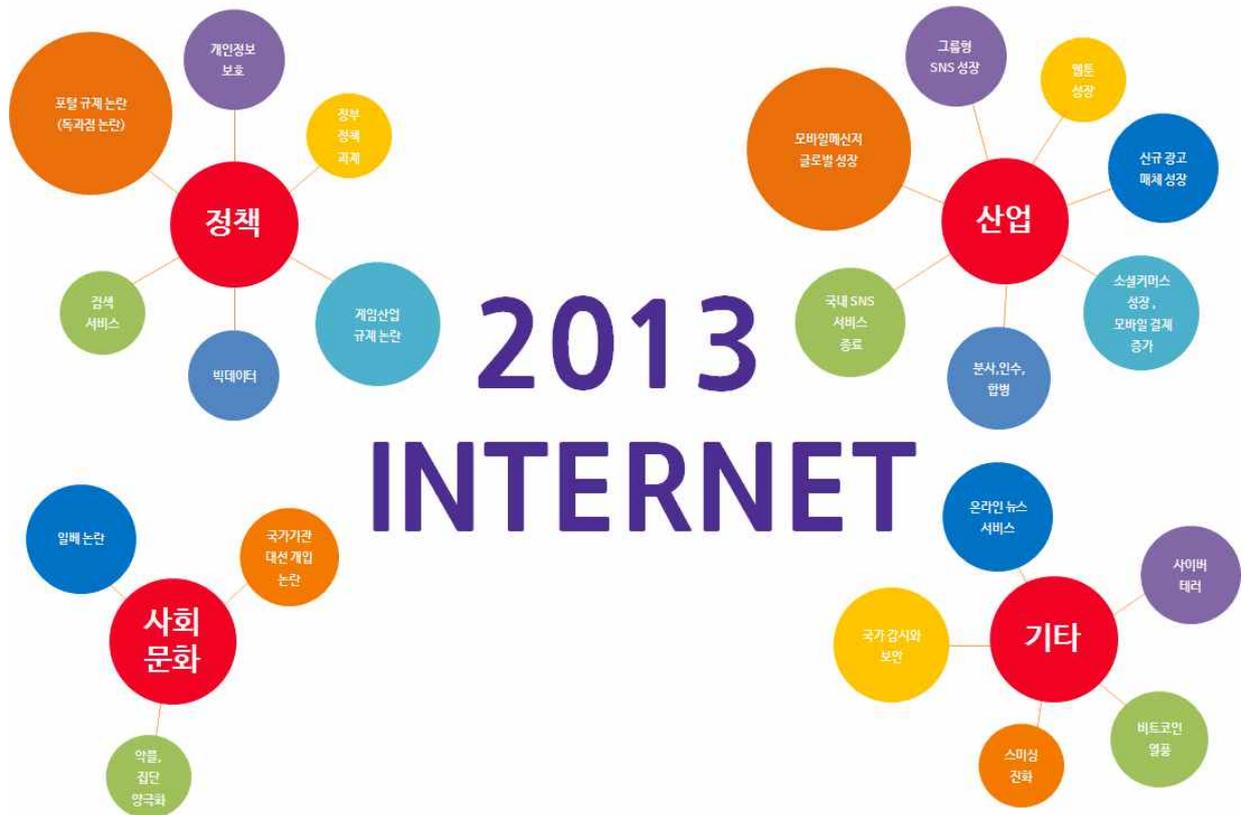
KISO 정책결정 제2호에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에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가 진실이고, 일부가 허위사실인 경우 임시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임시조치 여부는 게시물 일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맥락과 문제되는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부분과 폭력 및 상해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게시물 전체를 대상으로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1 - 산업 편

KISO

<Keyword>
 모바일 메신저, 글로벌, 그룹형SNS, 웹툰, 서비스 종료, 모바일 결제, 소셜커머스, 온라인광고, 모바일광고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연결된 지 31년을 맞은 2013년, 인터넷 이용 인구는 4천만을 돌파

하였으며, 인터넷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공간,

존재, 분야가 되어있다.

이번 KISO저널 13호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둘러싼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이슈들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새로 맞이하는 2014년의 인터넷을 전망하고자 인터넷 업계, 학계, 언론계 등의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이번 KISO 저널 13호 기획동향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는 2013년의 인터넷 관련 주요 이슈를 간추리기 위하여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2인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경력이 10년 내외인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간 진행되었다. 2014년의 전망은 인터넷 관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KISO 저널 편집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2013년의 인터넷 이슈는 크게 인터넷 산업, 인터넷 사회·문화, 인터넷 정책, 기타 분야의 네 분류로 나뉘었다. 성장과 가능성, 논란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2013년의 인터넷. 그 이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2014년의 인터넷을 예상해보자.



1. 모바일 메신저 등 국내 서비스의 글로벌 성장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일본, 대만, 태국에서 확고한 1등으로 자리 잡아 2013년 11월 가입자 수 3억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카카오톡은 누적 가입자 총 1억 1500만 명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확대 중이다.

모바일 메신저뿐만 아니라 다음의 쏘메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메라 등 모바일 기반의 이메일, 카메라 등의 서비스도 해외 이용자 반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2013년 한 해 동안 나타난 국내 모바일 앱 서비스의 성장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라인 가입자 추이



(출처: 한국경제, 2013.11.25.)

2. 그룹형 SNS의 성장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 SNS의 성장률이 다소 주춤하고, 오프라인상의 지인을 기반으로, 또는 소수의 집단이 모여 사용하는 그룹형 SNS가 성장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네이버 밴드가 월간 체류시간 면에서 카페 서비스를 추월('13.12.13)하는 등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 그룹, 인맥을 50명으로 제한하여 맺을 수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데이비와 같은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싸이월드가 오프라인의 인맥을 기반으로 하는 폐쇄형 인맥으로 큰 열풍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폐쇄형 인맥 위주의 서비스에 다시 주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산

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난 한 해 였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개방형 SNS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그룹형 SNS의 성장이 올해에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이 과정, 그룹형 SNS를 통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사회적 일탈-에 대한 우려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과거 폐쇄적 그룹형 서비스들의 전철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3. 웹툰의 성장

그 동안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웹툰이 2013년 큰 성장을 거두면서 화제에 올랐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2의 한류라 불리며, 이미 업계에서는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10월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서 전시된 웹툰 코너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높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파 이브’ 등 영화, 드라마화가 이어지면서 웹툰 콘텐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2013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네이버 웹툰 전시관



(출처: 지디넷코리아, 2013.10.15.)

4. 국내 SNS 등 서비스의 잇따른 종료

2013년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SNS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토종 SNS들의 서비스 종료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네이버 미투데이, 다음 요즘, SK커뮤니케이션즈 C로그, KTH 아임iN, 푸딩2, LG유플러스 와글 등 출시 초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서비스들의 잇따른 종료가 결정되면서 많은 이용자

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프리챌, 나우누리 등의 웹 기반으로 오랜 기간 제공되어온 포털 서비스들도 막을 내리면서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의 빠른 변화를 실감케 한 한해였다.

5. 스타트업 열풍과 분사, 인수, 합병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만 5천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 수가 2012년 2만 8천여 개에 달하였다. 2013년은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폭증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분사 계획 발표(2013년 12월), 네이버의 한게임 분할(8월), 포털사의 모바일 런처 포함 모바일 영역 개발사 인수 등 대형 포털사들의 움직임들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 2013년의 각종 서비스 종료 공지



6. 소셜커머스의 성장과 모바일 결제 이용자의 증가

2013년은 소셜커머스의 시장규모가 2조원을 돌파하여 3조원대의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 성장세에 눈길이 가는 한 해였다. 한편 선도 업체 3사(위메프, 쿠팡, 티몬)의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증대한 것으로 알려져 든 성장세와 함께 시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 전체 매출의 약 1/3이 모바일 결제에서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결제 패턴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동시에 전반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여 향후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7. 신규 광고 매체의 성장

기존의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등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유튜브 등의 동영상 매체와 SNS 기반 광고의 수익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개인이 올린 정보 또는 검색한 정보들을 모아 분석하여 잠재 고객에 대한 광고 노출이 확대되고 있어 광고의 타겟층을 보다 정교화하고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해 추적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시장의 성장세는 광고업계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용행태에도 많은 효용을 가져다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태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등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나, 이 경우도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법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온라인광고의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보보호법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에도 온라인광고의 확장과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SO JOURNAL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2 - 사회·문화 편

KISO

〈Keyword〉
일베, 대선개입, 악플, 집단양극화

1. 일베 논란



2013년에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각종 논란과 함께 자주 화두에 올랐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커뮤니티가 바로 그것이다. 일베는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 비하, 문서위조, 음란, 성매매 게시물 등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정치,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명예훼손 등 일종의 온라인 혐오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베에 대해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를 권고(11월)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인식이나 이와 같은 권고로는 일베의 역기능 현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강력한 제

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 불거진 일베 논란은 우리 사회의 온라인 문화가 가진 역기능의 심각성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에서의 관용과 불관용의 경계, 인터넷 공론장의 건전성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베의 극단주의적 특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에 대한 일베의 집단적 관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일베에 대한 대항매체인 ‘일간위스트’가 등장하여 인터넷 공론장의 양극화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혐오표현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SNS나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의 인터넷 콘텐츠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2013년 한 해 동안 정치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큰 쟁점이 되었다.

이번 댓글 등의 조작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터넷 공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을 도구로 삼아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에의 정치적 개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논란은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대선 개입 의혹들이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2013년에 이어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기관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2014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등에서도 계속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 악플, 집단양극화 등 역기능 지속

악플, 무작정 퍼나르기, 페이스북 및 트위터 추천 수 조작 등 윤리의식이 결여된 인터넷 역기능 현상이 2013년에도 이어졌다. 또한 근거 없는 괴담, 악성 루머의 확산으로 사회구성원간의 불신이 확산된 한 해였다.

한편, 악성댓글로 인한 권리침해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 그에 따른 처벌도 증가하였다. 이에 포털사들도 KISO를 통해 집단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의 자유와 반사회적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는 문제도 역시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리 보호 간의 팽팽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악성 루머, 악플 등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악성댓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누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자율 체크 시스템(예컨대 팩트체커 fact-checker)’ 등을 언론사, 포털, 대형 커뮤니티, SNS 등 주요 사이버 공간에 설치할 것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괴담을 판단하고 바로잡는 시스템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계속 존재할 것이기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KISO JOURNAL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3 - 정책 편

KISO

<Keyword>
포털 규제, 독과점, 게임규제, 정책,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검색서비스, 검색중립성



1. 포털 규제 논란(독과점 논란)

포털이 뉴스제공자, 인터넷 문화에 대한 거대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면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포털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하여 독과점적 횡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검색, 뉴스 관련 각종 규제 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규제(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공정위가 네이버, 다음의 동의를 수락하면서 포털이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 방안, 상생 방안을 논의하

여 시장 자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이벤트>

- (4월) 부동산 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치권 논의가 거세지기 시작
- (5월) 공정위의 포털 조사
- (8월) 네이버 부동산 사업 출수 및 일부 서비스 종료 등 발표
- (10월) 미래부, 검색 가이드라인 발표(광고 구분 표시 등)
- (11월) 공정위 동의를결 수용
 - 상생발전협력회의(7월, 11월), 인터넷 상생 협의체, 상생펀드 조성(7월), 벤처기업상생 협의체 출범(8월) 등 다양한 상생 노력 전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정착하여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는 의례적으로 산업을 견인하는 사업자가 발생되기 마련이고 인터넷산업을 있어서의 포털사업자의 지위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포털사업자의 인터넷산업에 대한 공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산업이라는 신산업의 발전에서는 어느 선도하는 사업자의 성장과 주도는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를 규제하는 방식 또한 신산업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경쟁법질서 틀을 적용하려는 규제일변도의 최근의 입법론에 대하여 다양한 찬반 논쟁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게임 산업 규제 논란

올 한해 게임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려는 ‘중독 예방법’을 비롯한 규제 강화 입법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는 문화와 산업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위축이 예상된다며 적극적 반대 활동을 전개했고, 사회적으로도 게임산업이 유망 산업이라는 인식과 유해 산업이라는 인식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 업계+이용자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이벤트>

-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발의
- (10월) 4대 중독법 공청회 개최
- (12월) 게임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 30만 돌파

이와 같은 “중독예방법”, “게임셧다운제” 등은 게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과잉입법이라는 점에서 2014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게임 산업은 현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 창조산업의 대표적 산업이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규제의 문제는 2014년에도 사회, 교육, 법의 총체적인 공론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새 정부의 정부정책과제 관련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점 추진 국정 과제로 ‘세계 최고 인터넷 생태계조성’이 꼽히면서 인터넷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세부 추진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통신심의 축소, 인터넷 신산업 육성, 산업위축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터넷 산업에 대한 구체적, 명시적인 국정 과제의 채택은 역대 정부 중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으로는 ICT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으나, 기존 부처들과의 관할 경쟁구도 속에서 부처 개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등도 발표되지 않아 향후 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터넷 규제 개선은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국정과제이자, 2013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확정된 바 있어 2014년에는 다양한 규제 개선 논의가 각 부처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이나 구체적인 개선 과제 설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임규제법이나 인터넷관련 규제법의 입법논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방향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2014년에는 구체적인 과제의 제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빅데이터 활성화 VS 개인정보 보호

정부 3.0, 창조경제를 필두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상정보 외의 ‘민감정보(성적 취향, 정당가입여부 등)’ 등 개인의 디바이스를 통해 전송된 디지털 기록들이 취합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자기통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재의 법체계(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현 시점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

데, 개인정보 수집 혹은 보호의 영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과 명확한 성과물이나 뚜렷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보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 정보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사용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에도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책 이슈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중 어느 면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점으로, 최근의 빅데이터, SNS,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신서비스의 등장과 더불어 보호의 문제로만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체계를 개편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의 논의이다. 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충분히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사회에서 현행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많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합 문제가 그것이다. 중복 규제 이슈와 각 법률 간 상충하는 조항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5. 검색 서비스 관련

네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2013년 12월 다음과 검색 제휴 사업을 준비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검색 서비스는 네이버와 다음이 큰 축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검색 서비스가 두 포털사에 집중됨에 따라 공공성과 공정성 관련 검색 중립성¹⁾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검색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상업화, 폐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을 아우르는 현재, 인터넷

1) ‘검색중립성’이란,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결과가 포괄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미국과 EU에서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둘러싸고 논쟁이 촉발됐으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뉴스토마토, '13.9.22>

서비스에서 검색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총론적으로 본다면 검색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점에 집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결론을 얻기 쉽지 않다. 검색서비스라는 것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색서비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사회적, 문화적, 법적 성격 등에 대한 인터넷 참여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실질적으로도 2014년에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에 포털의 검색 중립성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검색중립성을 규정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검색순위의 근거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도 제안되어 있어 포털에 대한 검색중립성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ISO JOURNAL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4 - 기타 편

KISO

〈Keyword〉
온라인 뉴스, 사이버테러, 스미싱, 비트코인, 국가감시, 보안



1. 언론: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변화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내일신문, 미디어 오늘 등의 온라인 뉴스가 유료화되었

다. 또한 네이버 뉴스 캐스트가 뉴스 스탠드로 전환(4월)되면서 언론사닷컴으로 유입되는 클릭수보다 오히려 네이버 뉴스 섹션의 UV, PV 증가되어 중소 언론사들의 클릭 수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갈등 국면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반면 뉴스 스탠드 등을 시행하지 않는, 다시 말해 뉴스 편집권을 가진 포털은 편집권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언론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기능을 제한하는 등 신문법 개정안들이 발의 되면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한 포털 뉴스 이용자의 증가가 소비자의 편익, 포털의 수익모델, 언론사의 수익구조/언론권력의 이해관계 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2. 범죄: 사이버 테러

2013년에는 3월 20일, 6월 25일의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였다. 국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언론 및 방송사, 금융권과 같은 민간 영역의 사이트들을 대상으로도 공격이 나타났다.

이들 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되면서 단순한 기술적 해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단순한 질서유지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최근 급변하는 북한정세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적 대응체계가 적절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더 노골적이고 더 과감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과거에는 공공기관, 민간의 대규모 사이트를 직접적인 공격대상으로 삼았으나, 모바일 앱, 신생 SNS 등 민간 이용자들이 대규모로 몰려 있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테러도 예상되므로 향후의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범죄: 스미싱의 진화

2012년 말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스미싱이 2013년도에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국세청, 경찰 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송년모임, 택배, 청첩장 등 사칭 수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법은 점차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4년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악성파일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를 겨냥한 모바일 결제 및 전자금융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스마트뱅킹 사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등 다양한 수법의 변칙적 모바일 보안 위협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스미싱의 진화에 따른 피해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 및 예방 캠페인을 넘어서는 신고접수, 피해보상, 범인색출 등 피해 이후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국제: 비트코인 열풍

과거 가상화폐로 주목을 받은 싸이월드 ‘도토리’는 해당 서비스에서만 결제가 가능하

며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거래가 줄어들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은 온/오프라인의 거래가 가능하며 글로벌 통용화폐가 되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이란, 일종의 사이버머니(가상화폐)로 암호화 되어 있는 컴퓨터의 문제를 풀어 화폐를 ‘채굴’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총 2100만개만 발행하여 쓸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다. ’13년 12월 현재 1200만개가 채굴된 상태이며, 일종의 환율 개념과 같이 1 비트코인당 가격은 초기 약 25만 원에서 약 120만원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점에서 비트코인의 결제가 처음으로 가능해졌으며, 국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화폐로 주목받고 있으나, 가격이 치솟는 등 ‘비트코인 거품’, ‘해킹’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당분간 발행량의 제한, 국제거래에서의 편리성, 거래의 익명성 등의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 사용처가 확대되고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각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법규가 마련된다면 기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할만한 통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독일, 미국 등 일부 서방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통화로 인정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권 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틈새 화폐 시장을 노리려는 반시장주의적 성향의 국가나 집단들에 의해 널리 이용될 경우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국의 ‘바이두’라는 거대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데, 만약 중국이 비트코인의 총량 제한을 풀 경우 가상화폐시장이 더욱 가열화 되거나 무한 투기도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결국 대안화폐의 본질인 ‘약속’이나 ‘신뢰’라는 본질적 부분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5. 국제: 국가 감시와 보안

미국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한 미국의 외국정보 감시 및 도청 이슈로 안보와 관련된 감시이슈가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스노든이 폭로한 도청 대상 국가는 미국,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빅데이터와 맞물려 국가기관에서 특정 개인의 성향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가로부터의 감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한 해였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감시·도청에 대한 제도적 규제 또는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고 더 나아

가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웨어러블 컴퓨팅 등의 확산 및 ICT 융합 고도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도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환경 하에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바일 정보보안의 시장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ISO JOURNAL

〈주요 이벤트〉

- (6월) 스노든이 미국이 프리즘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초로 폭로
- (7월)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도청하고 있음을 폭로
- (10월) 미국이 각국 정상을 도청했다는 비밀문건이 가디언을 통해 공개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

(Edward Joseph Snowden, 1983.6.21. ~)

- CIA와 NSA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로, 2013년 NSA의 기밀문서를 폭로하였으며, 현재 러시아에 은신 중이다. 스노든은 최근 가디언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미국 외교전문지 FP가 선정한 ‘올해의 사상가’(13.12.13)가 되기도 했다.

〈참고사항〉

- 2013 이슈 키워드 선정 참여 전문가 : 총 22명
 - 인터넷 관련 업계 전문가 : 9명
 - 인터넷 관련 학계 전문가 : 8명
 -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 3명
 - 인터넷 관련 언론계 전문가 : 2명
- 2014 전망 : KISO 저널 편집위원회

※ 본 특집의 내용은 KISO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 팀장

〈Keyword〉
right to erasure, 개인정보, 잊혀질 권리

1. 유럽연합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혁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삭제(erasure)에 대한 청구권은 유럽정보보호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공표로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지침은 그 부제를 통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을 보호하고 - 회원국 간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¹⁾

해당 지침과 관련한 중요한 액션 플랜이 이후 스톡홀름 프로그램(The Stockholm

Programme, 2009)을 통해 구체화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2010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사법정의, 자유, 그리고 보안 등의 분야에서 유럽연합이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스톡홀름 프로그램은 제2장 ‘권리의 유럽(Promoting Citizens’ Rights: A Europe of Rights)’에 포함된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2.5. Protecting Citizen’s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를 통해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가 유럽연합에서 보장하는 근본적 권리의 영역에 속하며,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내,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유

1) Council Directive 1995/46/EC of October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럽정보보호지침의 개인정보 보호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²⁾

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스톡홀름 프로그램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통합전략의 수립을 위해 수회의 공청회와 다자간 대화, 그리고 정책 대안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연결된 세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21세기를 위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Safeguarding Privacy in a Connected World: A European Data Protection Framework for the 21st Century)’라는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 문서를 내놓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유럽정보보호규정(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기초가 되었다.³⁾

유럽연합은 2012년 1월 25일에 유럽정보보호규정(안) 초안을 제안서(proposal)의 형태로 확정·공개하였는데, 해당 제안의 제3장 제17조에서는 “잊혀질 권리, 그리고 (데이터) 삭제에의 권리(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를, 제18조에서는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권리(Right to Data Portability)”를 담고 있다. 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삭제의 보장을, 그리고 후자는 기존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철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많은 논의를 거쳐 2013년 10월 21일에 유럽정보보호규정(안)의 수정 문안(Compromise Text)을 승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LIBE(The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가 의회의 수많은 위원회를 조율하여 최종 수정 문안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정보보호규정(안)의 구체적인 수정 문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⁴⁾

- Extended Territorial Scope(지역 적용범위의 확장)
- Clarification of Key Concepts(주요 개념의 명확화)
- Changes to the Legal Bases for Data Processing – Legitimate Interests and Consent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변화 – 합법적 이해관계와 동의)
- Reinforcement of Data Subjects Rights (정보주체가 갖는 권리의 실행)
- Data Protection Officers(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Breach Notification, Fines and Compensation (침해 통지, 벌금 그리고 보상)
- International Data Transfers (국제 개인정보 전송)
- Right to Erasure (삭제에 대한 권리)
- Miscellaneous (기타)

2) The Stockholm Programme – An open and secure Europe serving and protecting citizens(2010), Available: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52010XG0504\(01\):EN:NOT](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52010XG0504(01):EN:NOT)

3) Muge Fazlioglu(2013), Forget me not: the clash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3, Vol. 3, No. 3.

4) LIBE(2013), Civil Liberties MEPs pave the way for stronger data protection in the EU, Available: https://www.huntonprivacyblog.com/wp-content/files/2013/10/EP_Justice-Press-Release.pdf

위와 같은 수정문안이 채택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 NSA에 의한 PRISM과 같이 광범위한 국제적 온라인 감시체제로부터 유럽회원국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의 보호가 핵심 이슈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정보보호규정(안)의 수정 문안에서는 삭제청구권(Right to Erasure)이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가 삭제청구권(Right to Erasure)으로 변경되면서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2.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서 삭제 청구권(Right to Erasure)으로

유럽정보보호규정(안) 제17조는 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삭제 및 그 확산을 방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 정보가 수집 또는 처리되는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b) 정보주체가 제6조 (1)의 (a)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보관 기관이 만료한 경우, 그리고 정보 처리

에 대한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우 (c) 정보주체가 제19조(반대할 권리, Right to Object)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d) 데이터의 처리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유럽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기존 유럽정보보호지침이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한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을 규정한 데 비해 유럽정보보호규정(안)은 광범위한 제한 범위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유럽정보보호규정(안)은 특별히 정보를 보존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 예를 들어 유럽정보보호규정(안) 제83조, 정보의 역사·통계·과학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잊혀질 권리 및 삭제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

참고로, 유럽정보보호규정(안)은 삭제청구권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1) 잊혀질 권리 혹은 삭제청구권에 대한 ‘특정예외’와 2) 법의 적용범위에 따른 ‘일반적 적용예외’로 나뉘어져 있다. 전자의 경우 표현의 자유, 공공보건, 역사·통계·과학연구, 법률상 법적 의무, 개인정보 처리제한의 경우 등이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유럽연합 기관·기구·관청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이

5) 김혜전, 강달천(2013),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Internet & Security Focus(KISA)』, 2013. 6월호

그에 해당한다.⁶⁾

유럽연합에서 ‘수정 문안’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삭제청구권(Right to erasure)은 기존의 잊혀질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또한, LIBE는 “누구라도 그들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며, 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이 정보처리자에게 그의 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그 요청을 데이터가 복제된 제3자에게도 전달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⁷⁾

기존 유럽정보보호규정(안)과 비교했을 때, 수정 문안에서는 정보처리자에게 정보의 확산 방지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복제해 간 제3자에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달(forward)하기만 하면 되며, 이를 요청받은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했는지 여부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 변화의 배경과 남아있는 문제들

올해 승인된 유럽 정보보호규정(안)의 수정안은 기존 정보보호지침의 내용과 비교하

여 봤을 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제는 엄격해졌으나, 잊혀질 권리에 한해서는 최초 초안으로 공개된 제안서(proposal)에 비해 한 발 뒤로 물러선 느낌을 받는다.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 변화는 초안에서 규정한 잊혀질 권리의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여론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인 ‘Article 29 Working Party’는 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를 모두 알린다고 하여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복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더욱이 제3자가 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로 분류되지 않는 한 그들이 정보주체의 요구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통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⁸⁾

또한, 유럽연합 정보보호원(ENISA)의 전문가들은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의 재생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특정 정보의 삭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권리)의 충돌’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예: 2인이 들어있는 사진을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 삭제하는 경우)⁹⁾

6) 최경진(2012), 잊혀질 권리 - 개인정보 관점에서, 한국정보법학회 제16권제2호

7) 원문은 “any person would have the right to have their personal data erased if he/she requests it. To strengthen this right, if a person asks a "data controller" (e.g. an Internet company) to erase his/her data, the firm should also forward the request to others where the data are replicated.”임

8) Article 29 Working Party(2012), Opinion 01/2012 on the data protection reform proposals, Available: <http://www.europarl.europa.eu/document/activities/cont/201305/20130508ATT65841/20130508ATT65841EN.pdf>

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검색엔진 서비스 사업자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도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비록 표현의 자유가 잊혀질 권리의 적용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한 예외의 적용이 각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적용으로 인해 다른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잊혀질 권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 적용상의 문제점, 즉 인터넷과 같은 오픈 시스템에서 형태를 변형하여 복제된(예: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복제하거나, 텍스트를 화면상에서 캡처하여 이미지화 하여 복제) 개인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¹⁰⁾

또한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 관련한 정보의 일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라고 정의하고 있는 한,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 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의 보장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점 역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잊혀질 권리가 삭제 청구권(Right to Erasure)이라는 구체적 권리로 변신하여 위와 같은 기술적 문제점을 모두 이겨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 권리의 하나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유럽연합에서는 소위 ‘쿠키법’을 통해 쿠키의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겠다고 하여 전면적 동의를 시행하였으나, 기술적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영국의 정보보호 기관 등이 쿠키법 준수에 대한 강제를 공공연하게 철회한 사례 등에 비추어봤을 때,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그보다 더 어려운 잊혀질 권리가 ‘권리’로써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¹¹⁾ KISO JOURNAL

9) ENISA(2011), The right to be forgotten - between expectations and practice, Available: http://www.enisa.europa.eu/activities/identity-and-trust/library/deliverables/the-right-to-be-forgotten/at_download/fullReport

10) 이에 대해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이자 해당 대학의 인터넷 연구소 소장인 빅토르 마이어-쾨베르거(Viktor Mayer Schonberger)는 디지털 파일에 기간 만료 메타 태그(expiration meta-tag)를 포함시켜 ‘기억의 유한성(the finiteness of memory)’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메타 태그 역시 기술적으로 삭제를 완벽히 보장할 수 없으며, DRM 등의 보조수단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11)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13. 1월 ‘Changes to cookies on our website’라는 공지문을 통해 ICO 웹사이트 방문자에 대한 쿠키 설치에 있어 이용자의 명시적 허용(permission) 대신 쿠키 설치에 대한 이용자의 암묵적 동의(implied consent)가 있는 것 인정하겠다고 밝혀 쿠키법의 적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vailable: http://www.ico.org.uk/news/current_topics/changes-to-cookies-on-our-website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 관한 가처분 사례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KISO 저널 편집위원,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

〈Keyword〉
게시물 삭제, 임시조치, 일베, 게시물 삭제 가처분결정

1. 서언

어느 날 인터넷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비방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인가.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그 법적인 구제방법 중의 하나로서, 게시된 명예훼손 게시물을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삭제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2013카합1661 결정). 이 사례는 피해자가 유명 인터넷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운영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 게시물에 대한 방치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건으로 보도되면서 세

간에 알려지게 되었다.¹⁾ 그러나 사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훼손 표현물 삭제조치에 대하여는 이미 다양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없으나, 아마도 유명 인터넷커뮤니티인 ‘일베’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으로서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우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형사적으로 정보게재자를 처벌하는 방식,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한 삭제 등의 행정제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²⁾ 이 중

1) 연합뉴스, “법원, ‘일베’에 게재된 비방글 삭제 요청 받아들여”, 2013. 10. 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43101> 2013. 12. 23. 검색)

해당정보의 삭제를 취하는 민사상 삭제청구 소송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조치는 원상회복조치라는 성격을 가지면서 인터넷상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넷은 그 이전의 어떤 매체보다도 전파성과 유통성이 강화된 매체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원상회복조치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 더 이상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시물의 삭제는 해당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으나, 본안소송을 통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게시물의 전파방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렵다. 이를 대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 등의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를 두고 있으나, 이 제도는 자율적, 임시적, 비강제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결국 사법적인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사례는 바로 이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의 삭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본안소송에 앞서 본안판결과 동일한 만족을 가져오는 삭제 가처분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2. 이 사건 결정의 요지

이 사건의 의미는 첫째 만족적(단행적) 가처분 방식에 의하여 최근 빈발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게시물의 삭제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한 점, 둘째 게시물의 삭제 법리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점, 셋째 기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에 있어서 일부 절차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신청 요지를 보면,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일베’에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흥어, 전라디언, 종북, 좌썰,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 등으로 모욕, 비하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이 계속적으로 게시되자, 신청인이 위 게시글의 삭제 등의 조치 요구를 하고 삭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피신청인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신청인이 6개월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게시물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2시간³⁾ 이내에 게시물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2) 그 외에도 당사자 간의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명예훼손분쟁조정 등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정보계재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한계가 있다.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는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체 없이’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하여 삭제 요청으로부터 삭제까지의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을 2시간으로 본 것이다.

한 경우 위반행위 지속시간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원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명령을 함께 결정하였다. 특히 법원이 내린 결정방식은 이른바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으로서 게시글에 대한 삭제명령의 가처분에 의하여 본안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진다.

법원은 게시물 삭제의 법리에 대하여,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책임과 게시물 삭제의 무의 관계, 판단기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2003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게시물삭제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불법성이 현존·명백하고, 신청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비방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삭제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비방게시물이 올라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인터넷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법리

인터넷사이트 운영자⁴⁾의 인터넷상 게시물 의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삭제의무도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그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거나 알았을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민사상 책임이 있으므로 삭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 대법원도 “삭제 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4)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알려져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의 삭제의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삭제의무의 존부가 당해 이해관계 내에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일반적인 삭제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책임을 부과하는 것인데,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그와 같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더라도 사적검열이라는 문제점을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의 삭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이다(제44조의2)⁵⁾. 게시물의 삭제절차를 보면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등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핵심은 인터넷상 게시물의 명예훼손성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정하여 소명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특정된 게시물에 대한 ‘신청’을 전제로 이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의 삭제 신청이 없으면 인터넷사이트운영자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의 현

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유통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예상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정보게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임시적이고, 중간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게시물 삭제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의 하나라고 하겠다. 결국 이 제도에 의하면 피해자의 삭제 요청(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등의 법적 의무가 분명해지게 된다.

그런데, 인터넷상 게시물의 삭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중요한 판단을 한 바 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5) 이와 유사한 제도가 「저작권법」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임시조치제도(제103조)인데, 이는 삭제 대상이 불법저작물인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보통신망법상 제도와 절차와 효과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피해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할 소지를 제공하여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게시물 삭제의무의 일반법리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⁶⁾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 포털사이트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전원합의체판결의 논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안은 1심 가처분결정에 불과하지만, 일명 일베의 게시글 삭제에 관한 결정으로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개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게시글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될 경우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마땅찮다.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법상 정형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네티즌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전통적인 언론법상 구제수단을 취하기는 어

렵다. 그런 상태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 요청에 따른 게시물의 삭제 등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국 사법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법절차 중 본안판결에 의한 구제방안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인터넷상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다만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취할 수 있다면 유효한 분쟁해결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을 게시물 삭제에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만족적 가처분을 통하여 인터넷상 게시물의 확산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KISO JOURNAL

6) 이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 보면 해당 사실관계의 내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됨으로써 피고 포털사이트사 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와 같은 명예훼손게시물의 존재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게시물 삭제의무에 관한 법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사이버불링 예방위해 함께 노력해야” - 영국 Kidscape 부회장 인터뷰

김지은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협력실 선임연구원

〈Keyword〉

Kidscape, Safer Internet Day, SNS, 사이버불링, 영국, 인터넷리터러시, 청소년

인터넷은 더 이상 하나의 미디어, 매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자 생활이며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지내온 중장년층을 제외한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연령층은 인터넷을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로 인해 인터넷 문화와 윤리, 리터러시 등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닌 역기능에 차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불링 현상은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폭넓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KISO저널 13호에서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국제 민간기구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3 국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의 발표로 내한한 영국의 Kidscape의 부회장인 피터 브래들리(Peter Bradley)를 만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등 Kidscape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Q : Kidscape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며,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A : Kidscape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5년에 설립된 영국 최초의 민간 아동보호단체이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폭력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왕따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각각의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전반적인 아동의 안전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영국의 폭력, 왕따 등은 신체적 폭력 등으로 시작이 되었고, 최근 약 5년 전정도 부터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왕따를 시키는 일종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영국의 사이버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 초기에는 아무도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였고, 서로 자문을 구하고 제언을 하는 관계로 협력해 나가기 시작했다.

Q : 영국의 사이버불링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A :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통계상으로도 4명당 1명이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전통적인 불링(괴롭힘)과 다르게 우울증, 자해, 심하게는 자살에 이르는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 이 같은 현상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A : 영국의 경우에는 섹스팅이라는 성인물(텍스트, 동영상, 사진) 등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대체로 모바일기기를 통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과 잠시 이야기 해 보니 한국에는 이러한 문제 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의 “셔틀”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라마다 트렌드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Q : 영국에서 발생하는 섹스팅 등의 현상에 대해 영국 정부의 대응 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가?

A :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폭력법이나 사이버 불링 관련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Miscommunications Act¹⁾가 바로 그것이

1) 정식 법안 명칭은 [Malicious Communication Act](#)(일명 악성 커뮤니케이션 법)으로 1988년부터 도입되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고통이나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 문자 또는 다른 형식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 법 제1조에서는 외설, 혐오, 위협, 허위 내용이 포함된 편지 등의 서찰, 전자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게시물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 5000유로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다. 일반적인 불링이나 사이버불링 등과 관련한 별도의 법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진행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불링 때문에 미성년의 아이들을 전과자로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전과가 생기면 평생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이버불링 등의 현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다행인 것은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ASK.FM 등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예전에 비해 보다 협조적이고 빠르게 조치한다는 점이다.

CHIS(Coalition on Internet Safety)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안전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Kidscape를 포함하여 유럽의 12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아동의 인터넷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각 단체와 협력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CHIS는 기업이나 단체로 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터넷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 독립성을 잃을 수 있어 지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Q : 영국 정부와의 협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A : 정부와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은 편인데 그에 반해 민간단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거나 할 때 민간단체에 많이 의존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의 사이버 폭력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총리에게 조언을 하는 자리에도 참석하고 있다.

Q :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 영국은 폭력 자체나 청소년 왕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이버 폭력, 사이버불링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Kidscape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BIT(Bullying Intervention Training) 프로젝트는 Kidscape에 개발했지만 외부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지원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 편익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BIT 프로그램의 경우 비용에 대비한 효과가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약 2년 동안 아동 1명 당 9파운드)

정부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

업도 있는데, 매년 2월 개최되는 Safer Internet Day의 경우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비영리기관 수백여 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는 영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행사라고 보면 된다. 올해의 주제는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이며 앞으로도 더 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4개의 TV 채널을 통해 행사 소식을 전했으며 1000만 명까지 시청하여 꽤 널리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Q :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Kidscape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e-Primary Bullying Intervention Training(BIT)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면?

A :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영국 400여개 학교에 7~9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대한 어린 나이부터 사이버 폭력, 사이버불링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해당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2년 전부터 시작하였으며 중등학교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Q : 폭넓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단체들과 또는 정부와의 제휴 전략은 무엇인가?

A : 단체들, 정부와의 제휴 전략은 따로 마련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단체들이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종종 있어서 대화에 큰 어려움은 없다. 개인이 아닌 단체 조직, 기구로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를 정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도착하여 지난 월요일(11/4)에 대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한국은 정부의 일방적 소통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국은 이를 넘어 쌍방향 소통으로 정부에서 잘못된 일을 하면 민간단체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활동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Q :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지?

A :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정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학생들과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사이버

불링이 없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한국만의 특징은 아닐 것이지만 흥미로웠다.

또 한 가지는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방문하면서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최소 연령²⁾이 몇 세인지 아느냐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 보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학생이 모르면, 교사도 모를 것이고, 당연히 학부모 역시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SNS를 사용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도 거의 다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런 현상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Q : Kidscape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도 많은 민간단체들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A :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 성인물 등을 이용하거나 섹스팅 등을 경험하는 것이 사이버불링의 한 부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영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은 젊은 '대사'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에 참여할

2) 페이스북은 가입 연령과 관련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은 이용할 수 없음을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legal/terms>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대사들은 일반적으로 12~30세인데, 일반적으로 16~18세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젊은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을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 부모, 교육자, 산업, 정부가 서로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사이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KISO JOURNAL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김보겸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연구원

〈Keyword〉

유럽 평의회, 인터넷, 인권,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아동, 청소년, 리터러시, 권리구제, 인터넷 접근권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Council of Europe Guide on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의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 지침을 공개한 유럽 평의회는 1949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유럽의 47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범유럽적인 기구이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 연합(EU)과 마찬가지로 유럽 통합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통합에 집중하고 있는 유럽 연합과 달리, 유럽 내의 민주주의 실현, 인권 보호, 법치와 같은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사업을 하고 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유럽 연합과 유럽 평의회는 같은 목적을 갖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 또한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기도 하며 유럽 평의회는 예산은 회원국으로부터 충당하지만 2010년의 경우 예산 외 성금의 68%를 유럽연합에서 납부하였을 정도로 둘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¹⁾

유럽 평의회는 특히 유럽 내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다. 유럽 평의회 스스로는 물론이고, 유럽연합 역시도 유럽 평의회가 인권에

1) <http://hub.coe.int/web/coe-portal/european-union>

관하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선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²⁾ 유럽 평의회는 설립 후 1년 후인 1950년에 인권보호조약을 발표하는 등 인권에 관심이 많은데, 이 조약의 체결은 인권 보호와 관련된 유럽 평의회의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유럽 평의회는 단지 조약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하에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를 둬으로써 인권보호조약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유럽 평의회의 또 다른 활동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이 있다. 유럽 평의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20억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2012년에는 인터넷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유럽 평의회가 추구하는 가치인 유럽통합, 인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2012-2015 인터넷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³⁾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는 “인터넷 이용자 인권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 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유럽 평의회와 인권위원회의 로고



출처 : 유럽 평의회 홈페이지

2) <http://www.coe.int/aboutCoe/index.asp?page=quisommesnous&l=en>
http://eeas.europa.eu/organisations/coe/index_en.htm

3) <http://www.coe.int/t/dghl/cooperation/economiccrime/cybercrime/Documents/Internet%20Governance%20Strategy/Internet%20Governance%20Strategy%202012%20-%202015.pdf>

유럽 평의회의 인터넷 이용자 인권 지침 초안⁴⁾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유럽 평의회의 “인터넷 이용자 인권 지침”의 초안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표현과 보도의 자유, 집회·협회·참여, 생활과 정보보호, 교육과 리터러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 등 크게 7가지의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터넷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권을 강조한다. 누구나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어야 하고, 지역·소득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단체나 정부 당국에게 요청하여 인터넷으로의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때, 성, 인종, 언어, 종교를 비롯한 사회적 출신,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이처럼 인터넷에 대한 접근

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참여 가능한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인터넷 공간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표현과 보도의 자유를 비롯한, 집회 결성, 단체를 통한 연합, 민주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과 보도의 자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현, 보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개인이 정보나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언급되어 있다. 단, 개인이 온라인에서 표현과 보도의 자유를 제한 받는 경우 인권법에 따라야 하지만,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 또는 부적절한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각 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특정 종류의 콘텐츠 등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과 모이거나 교제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가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공공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

4) 이하는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유럽 의회의 인터넷 이용자 인권 지침 초안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oe.int/t/information/society/Rights%20of%20Internet%20Users/Draft%20Council%20of%20Europe%20Guide%20on%20Human%20Rights%20for%20Internet%20Users.pdf> (pdf 형식)

<http://www.coe.int/t/information/society/Source/Council%20of%20Europe%20Draft%20Guide%20on%20Human%20Rights%20for%20Internet%20Users.doc> (MS word 형식)

리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도 있다. 사생활과 정보 보호에 관한 것인데, 인터넷은 정보 소통의 장일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관과 공유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 및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정부 당국이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법과 규칙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인터넷은 기술적인 매체로서 누구나 인터넷 활용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콘텐츠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이해하는 능력도 이에 포함된다. 즉, 인터넷에 관한 교육,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빠지지 않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나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 폭력과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인터넷상에서의 성적 착취, 학대 또는 그

밖의 사이버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들을 침해받을 때의 구제 방법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들이 구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였다. 개인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당국으로부터의 조사를 요구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앞서 소개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의 초안은 유럽 평의회 인권 보호와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제정⁵⁾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한 지침의 초안은 지난 2013년 11월 중 공개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1차로 거쳤다. 향후 몇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제될 본 인권 지침을 통해 이용자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음으로써 민주적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KISO JOURNAL

5) <http://www.coe.int/t/information/society/>

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나수진 / (주)인비전커뮤니티 SLRCLUB 운영팀장

〈Keyword〉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티

최근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학사전은 자율규제정책을「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사이트에 게시되는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사이트에 특화된 자율규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커뮤니티의 자율규제정책은 이용자의 암묵적 동의 혹은 합의에 의해 정착된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국내 최대의 사진 커뮤니티인 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의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자율규제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되는지 소개하고 커뮤니티 자율규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1. SLRCLUB 소개

SLRCLUB은 DSLR 카메라(Digital Single-lens Reflex Camera)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로서 2002년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카메라 및 관련기기 정보교환, 사진이나 리뷰 등의 유저콘텐츠 생산·공유, 이용자 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제한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카메라가 생산, 보급되면서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일반 커뮤니티, 포럼, 갤러리, 중고장터, 소모임 등의 종합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SLRCLUB의 자율규제정책

SLRCLUB 개설 초기에는 DSLR 카메라를 보유한 소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가 운영되었다. 즉, 이용자의 대부분이 비교적 높은 연령의 DSLR 카메라 이용자에게 한정되었으므로 집단의 규모가 작고 생산된 콘텐츠의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분란이나 권리침해의 소지가 많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들 스스로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검열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가 이루어졌다. 서비스제공자의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디지털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었고, 게시판 내 분쟁조정, 부적합 콘텐츠 차단 등을 위해 널리 수용될 수 있는 명문화된 관리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콤팩트카메라, 휴대폰카메라 등 휴대성이 강화된 카메라의 보급은 초상권,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SLRCLUB은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게시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지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게시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발전시켜왔다.

가. 게시판 관리규정

SLRCLUB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이용자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이용하는 것은 ‘게시판 서비스’이다. 2013년 현재 SLRCLUB에서 이용 가능한 게시판은 소모임을 제외하더라도 50여개에 이른다. 이용자는 각 게시판

내에서 게시글, 답글,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따라서 게시판 관리규정이 SLRCLUB 자율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게시판 관리규정은 먼저 각 게시판의 개설 목적과 용도를 소개하며, 이에 따라 게시가 제한되는 내용을 설명한다. 관리규정은 1. 회원들의 공감대를 얻어 오랜 기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된 규칙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규칙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동양식이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는 배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자율규제항목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LRCLUB 이용자들은 개설 초기부터 게시판 내에서 높임말을 사용하였고 반말 사용을 자발적으로 규제해왔다. 따라서 관리규정에도 반말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있으며, 이와 같이 사이트 문화로서 정착된 규정은 운영자의 개입 없이도 대체로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편이다. 커뮤니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이용자가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들이 반말 사용을 지양해달라는 댓글 등을 작성하여 적응을 유도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반면, 2. 사업자가 커뮤니티의 바람직한 문화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정하는 항목도 있다. 이러한 항목은 대개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약하거나 없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양식에 대한 것이 많다. 「욕설 및 비속어 사용 금지」 또는 「비하 어휘 사용금지」 항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욕설 사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및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후자는 ‘보슬아치’, ‘자슬아치’, ‘흥어’, ‘전라디언’, ‘고담대구’ 등의 어휘 사용을 금지하여 성별 혹은 지역 간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정제된 언어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SLRCLUB의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 간 분란을 야기하고 발전적인 의견교환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항목 모두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물론 범죄정보, 청소년유해정보 등 3.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SLRCLUB의 게시판 관리규정은 법과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항목은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이용자의 암묵적 동의를 얻어 또는 사업자의 서비스운영목적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나. 게시물 관리요청 제도

게시물 관리규정이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율규제의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게시물 관리요청 제도’이다. 이용자는 게시물 관리규정을 참조

하여 본인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다.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사후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신고제도인 ‘게시물 관리요청’이다. 예를 들어, 관리규정에 의해 게시가 제한된 내용이 게시판에 등록된 경우, 회원은 신고버튼을 이용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관리요청을 접수한다. 관리요청이 접수되면 사업자(운영팀)가 해당 내용을 직접 열람하여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즉,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 개인의 1차적인 자율규제(작성자 는 본인 게시물의 신고접수를 족지를 통해 자동으로 통보받으며 게시물 수정이나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와 사업자에 의한 2차적 자율규제(관리규정에 의한 판단 및 최종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게시물삭제, 감점, 이용제한 등 타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남용과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시행중이다. 즉, 부정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 명 이상의 회원이 관리요청을 신청해야만 운영팀에 실제 신고가 접수되며, 신고사유가 부적절하거나 게시물이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열람조치 후 부정신고처리하게 된다. 부정신고가 5회 누적되면 게시물관리요청기능이 영구 차단되므로 이용자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신중히 접수해야한다.

다. 자율규제를 위한 편의기능

앞서 소개한 게시판 관리규정의 제정 및 관리요청제도를 통한 자율규제는 서비스 제공자인 운영팀이 규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다. SLRCLUB은 이용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자율정책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갤러리에 게시된 사진작품 중 공공장소나 공용PC에서 열람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시물에 레드리본을 달 수 있다. 이용자는 맞춤서비스 설정을 통해 레드리본 지정된 사진들의 갤러리 노출을 일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썸네일 형식으로 출력되는 ‘오늘의 사진’ 또한 일부 카테고리 차단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자율규제가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때, 관리규정에 의한 외부적인 규제 외에도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규제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자율규제라 할 것이다.

3. 올바른 자율규제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자율규제정책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사업자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 바람직한 커뮤니티 문화가 정착된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자율규제정책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1. 사업자가 커뮤니티 문화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분류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2.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3. 사후 조치가 일관된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일 4. 이용자의 의문이나 문제제기가 있다면 최대한 명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5. 관련법 개정, 기술발전, 다수 이용자의 의견에 따라 개정의 여지가 있는 항목은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SLRCLUB은 이용자가 관리규정 등을 습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 도움말, 이용문의 답변 등을 통해 이용자와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의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자율규제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관리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SLRCLUB을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게시물관리 표준규약 제정 연구에 함께 참여하였다. 일관되고 현실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자율규제 발전과 올바른 인터넷문화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분쟁 및 권리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나 권리침해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할 수단으로써 국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국가의 제재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이용자가 함께 모여 콘텐츠를 생산·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기 위한 서비스인 만큼, 외부적 제재에 따른 다양한 의견 교환의 위축이야말로 커뮤니티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와 참여를 얻지 못하는 규제는 이미 '자율'정책으로서 그 정당성을 잃을 것임이 자명하다. SLRCLUB이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건전한 소통의 장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는 이유다. KISO JOURNAL

〈참고문헌〉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한국헌법학회 활동 소개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Keyword〉
한국헌법학회, 헌법

1. 학회의 역사와 역할

한국헌법학회는 1990년대 초에 재창립되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헌법 담당 교수, 헌법유관기관의 구성원 및 헌법에 관심 있는 법조실무가 등이 회원으로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 헌법분야의 대표 학술연구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헌법학회는 헌법학계의 중요한 이론적 의제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유의미한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장은 매년 4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기학술대회와 연간 4회 발간되는 학회지인 헌법학연구를 통하여 열려 왔다. 일반적으로 정기학술대회는 3월, 6월, 9월 및

12월에 개최되며, 법학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헌법학계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헌법포럼의 형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헌법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의 활동에 더하여 홈페이지(<http://www.k-cla.or.kr>)의 운영을 통하여 회원에게는 물론이고 비회원으로서 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학회의 활동을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한국헌법학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유도하고, 학회를 건설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건의와 비판을 전달받아 왔다. 헌법학회 역대 집행부는 이러한 활동과 홈페이지의 운영을 전통의 터전

위에서 한국헌법학회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노력하고 있다. 독자적인 학문적 위상을 갖고 발전해 가도록

<그림 1> 한국헌법학회 홈페이지



2. 주요 학술활동

헌법학회는 매년 최소한 4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헌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진작하고, 국가와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헌법적 쟁점 혹은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관한 헌법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하였다. 특히 예년과 같이 2013년도에도 4

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3월에는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기원을, 그리고 6월에는 평등권을 대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과 12월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헌법에 제기하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복지국가의 헌법문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더불어 헌법학회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학술적 활동을 진작하고 헌법이론과 실무가 잘 교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마다 포럼 내지는 세미나 형식으로 유관기관과 헌법적인 쟁점에 대한 공

동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학술지 헌법학연구의 간행을 통하여 헌법학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표하여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헌법규범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유의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여러 헌법에 대한 주석서 작업 등을 통하여 헌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헌법학회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수행한 구체적인 학술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학술대회

가. 제77회 학술대회

- 주제 : 경제민주화-역사적 기원
- 일시 : 2013년 3월 22일(금)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101호

- 공동주최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 제1주제: 바이마르 헌법 전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 <송석윤 교수(서울대)>
 - 제2주제: 1948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 이해방법, 실현 <이영록 교수(조선대)>
 - 제3주제: 1987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 이해방법, 실현 <김형성 교수(성균관대)>
- 토론자 : 이부하 교수(영남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정상우 교수(인하대), 권건보 교수(아주대), 김진곤 교수(광운대)

〈그림 2〉 한국헌법학회 제77회 학술대회



나. 제78회 학술대회

- 주제 : 평등의 근본문제
 - 일시 : 2013년 6월 14일(금)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주최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 제1주제: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 다원적 평등론의 모색 <김종철 교수(연세대)>
- 제2주제: 평등규범의 사인간의 적용과 효력 <윤영미 교수(고려대)>
- 제3주제: 한국헌법상 평등심사기준의 재정립 <정태호 교수(경희대)>
- 토론자 :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전문),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전문),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 법전문), 이노홍 교수(홍익대), 김주환 교수(홍익대), 김복기 연구관(헌법재판소)

〈그림 3〉 한국헌법학회 제78회 학술대회



다. 제79회 학술대회

- 주제 : 헌법과 혼인·가족제도
- 일시 : 2013년 9월 13일(금)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 공동주최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 제1주제: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가족
〈김병록 교수(조선대 법학과)〉

- 제2주제: 고령화 사회에서의 혼인·가족제도 보호
〈구재균 교수(아주대 법전원)〉
- 제3주제: 저출산 사회에서의 혼인·가족제도 보호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전원)〉
- 토론자 : 조홍석 교수(경북대 법전원),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전원), 조성혜 교수(동국대 법학과), 남북현 교수(호원대 법학과), 석인선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과)

〈그림 4〉 한국헌법학회 제79회 학술대회



라. 헌법학회 헌법연구포럼·대법원 헌법
연구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 주제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및 집회의 자유
- 일시 : 2013년 11월 2일(토)
- 대법원 16층 대회의장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 제1주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

동의 범주 <이규홍 부장판사(고양지원)>

·제2주제: 위헌법률심판의 본질과 대상-국회
미관여 입법, 관습법 등을 중심으로 <권건보 교
수(아주대 법전원)>

- 토론자 : 강태수 교수(경희대 법전원), 정계선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홍성욱 판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재현 교수 (동아대 법전원)

<그림 5> 한국헌법학회 헌법연구포럼·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마. 제80회 학술대회

- 주제 : 복지국가 이념과 헌법의 과제
-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 장소 : 헌법재판소 대강당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 제1주제: 복지국가의 헌법이념 - 복지, 평등, 자유 <황도수 교수(건국대 법전원)>
- 제2주제: 복지생산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기능분담 - 헌법적 접근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 제3주제: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호 -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전원)>
- 토론자 : 김해원 교수(전남대 법전원), 유미라 연구관(헌법재판소),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전원), 장선희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법학과), 김진곤 교수(광운대 법과대학), 이은선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그림 6〉 한국헌법학회 제80회 학술대회



2) 학회지의 간행

헌법학회는 2012년도 2013년에 걸쳐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에서 제19권 제3호까지 4권을 정기 간행하였다.

-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2.12.31) 발간 : 게재논문 9편
- 헌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3. 3.31) 발간 : 게재논문 14편
-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3. 6.30) 발간 : 게재논문 15편
-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9.30) 발간 : 게재논문 13편

3) 기타 학술활동

헌법학회는 매년 헌법학회 학술상 수상 학술상규정 제5조에 따라 학술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심의위원회가 헌법학회회원의 논문에 대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및 학회 활동과 학회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학술상 수상자를 결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학문연구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헌법학계의 대표학회인 한국헌법학회는 헌법이 국가사회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입헌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헌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실무의 기초가 될 헌법주석 및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등의 연구 작업을 시행해 왔다.

3. 향후 학회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는 앞으로도 계속 헌법연구자들의 폭넓은 저변을 확보하여 학회의 외연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헌법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무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명실 공히 헌법학분야의 대표학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이다. 학술대회의 내적인 충실을 더욱 기하여 다양한 헌법적인 주제와 각계각층의 회원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신진학자들의 발굴 및 양성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헌법학회가 신진헌법학연구자들의 배양기와 등용문이 되도록 하며, 중견연구자들의 연구를 더욱 진작시키고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헌법학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것이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아시아헌법학회 뿐만 아니라 세계헌법학회의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오는 2018년 세계헌법학회를 한국에 유치하도록 노력하여 우리 헌법학자들과 세계 각국의 헌법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한국헌법학회의 국제적 신인도와 위상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KISO JOURNAL

[서평] 융합문명론

이병민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Keyword〉
 융합, 문명, 패러다임, 미디어, 하버마스

제목	융합문명론 -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저자	김문조		
출판사	나남	출간일	2013년 9월 5일

처음 책장을 펼치면서 드는 생각은 제목에서 느껴지듯 ‘문명(文明)’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었다. 그러나, 생산양식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다양한 사례와 친절한 이론의 설명까지 곁들인 저자의 친절함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매우 ‘재미있는’ 문명 여행을 했다는 소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문명과 역사에 대한 단상은 각각의 시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건들이 전문화 과정을 통해 분화되어가는 과정을 목도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저자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문명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듯이,

다양한 증거들이 아니더라도 세계는 ‘어떠한’ 힘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소위 ‘융합’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조류에 기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의 힘은 과거에도 존재하던 단순한 단편적 현상과 달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을 동시적으로 포섭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향성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융합이라고 보인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디지털 기술과 그에 따른 미디어의 발전에서 많은 부분이 촉발된다고 보고 있는데, 정보의 생성과 변환, 공유, 네트워크 등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4개의 파트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융합현상과 그에 따른 논리에 대해 그 기원과 의의를 진단하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1장~4장),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융합적 사회현실에 대한 접근법을 고찰하고 있고(5장~7장), 세 번째 파트에서는 융합사회가 갖는 특성과 다양한 역동성을 영역별로 규명하고 있으며(8장~9장), 마지막 파트에서는 융합시대의 도전과제와 정책적 구상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더하고 있다(10장~12장).

저자는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인류 문명과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와 현상들을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의 효능이 네트워킹 기술과 합류하여 소통양식의 일대혁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책의 내용에 따르자면,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혁명이 미개사회를 농경사회로, 산업혁명이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정보혁명이 산업사회를 정보사회로 전환시켰듯이,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에 의한 소통혁명이 융합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보다 넓게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요소들 간의 다양하고 자유스러운 결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융합문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모이고(수렴), 섞이고(혼합), 바뀌고(변형), 나뉘고(분화), 거듭나거나(재구성), 새로운 것으로 창발하는 현상으로서의 '융합'이라는 용

어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 활동이나 노동시장에서 과거 산업사회의 고정성이나 안정성과 비교하여 수평적이고 비고정적이며 유동적인 성격들이 나타남에 따라,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명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내재적 질서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인 모든 차원에서 이러한 질서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정의되어 재정비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새로운 문명화 과정을 일련의 단계적 연속체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정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주축으로 한 기존의 정보문명론은 융합문명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책의 전체 구성에서 볼 때, 문명의 출현 배경, 문명론의 의미, 문명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와 사회의 향방, 새로운 소통질서의 모색, 각 영역별 동학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면서도 꼼꼼하게 관찰되고 분석된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화의 사례와 솔로대첩, 개죽이, 개똥녀 사건, T24 페스티벌 등 정보화 공간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재미있는 증거로서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하나의 보너스가 되고 있다.

다만, 저자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융합사

회의 도래에 따라 나타나는 혼돈과 단절, 방치, 불화, 격차, 추방 등 잉여와 불균형의 문제들은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가 제시한 정책적 구상과 함께, 미디어 생태계를 주축으로 한 생활세계의 새로운 변화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천전략의 모색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문명과 세계의 변화를 주도해온 것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앞세운 분화나 전문화의 힘이었다. 이런 분화의 힘이 이제는 융합적인 힘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의 결합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에 강조한 대로, 저자는 뉴미디어에 의한 소통 혁명은 융합 사회, 그것도 모든 물질·정신적 요소의 '자유결합'을 촉진하는 융합 문명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문명의 융합적인 전환에 관한 이해를 통해 장차 사회 발전의 방향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전체적이면서도 일관된 내용이 물 흐르듯 잘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대학 강단에서 사회학과 지식, 사회, 문화 등의 주제를 가르치면서, 노동·정보사회·문화·과학기술·현대사상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저자의 공력(功力)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학계의 대표적인 석학인 저자가 진지하게 문명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 정리하여 하나의 결과물로 제시한 이 책은 최근의 융합현상과

문명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 도움이 될 주요 '개념들'을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앞세워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문명사를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될 것이며, 융합문명에 대한 최근 연구와 미래 문명의 발전방향을 예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학 전문서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하버마스나 비트겐슈타인 등 해당 전공분야의 주요 이론들이 정리되고 문명론과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서라기보다는 전문서나 교재에 가까운 점은 독자들이 감안을 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정보화 이후의 융합시대로 이행되면서 생기는 사회의 변화와 변화 방향을 제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잘 조명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을 융합 현상들을 '문명론'이라는 초장기적 관점으로 잘 정리한 이 책은 독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가 독점해오던 담화영역에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융합문명론의 시각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가 하는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삶의 수준'이나 '삶의 질'을 넘어 '삶의 의미'를 고민해야 할 시대로 바뀌어 간다는 저자의 주장처럼, 인류의 능력을 믿는 입장에서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독자들에게 즐거운 '자극'이 되기를 희망한다. KISO JOURNAL

국내 주요 커뮤니티, KISO 회원 가입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지난 11월, 국내 주요 커뮤니티 5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알렸다.

이번에 KISO의 신규 회원사가 된 5개사는 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뽀뿌커뮤니케이션(뽀뿌)', '씨나인(오늘의 유머)', '씨엘커뮤니케이션즈(클리앙)', '(주)인비전커뮤니티(SLR클럽)', '(주)파코즈 하드웨어(파코즈하드웨어)' 등 5개사이다.

이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인터넷 사업자의 게시판 관리 등에 관한 표준규약' 제정을 위하여 연구반 활동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향후 커뮤니티 사업자의 신규 가입을 통해 KISO의 자율규제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활발한 자율규제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을 기대한다. KISO JOURNAL



<KISO저널 제13호>

발행일 2013.12.31.

발행인 최세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명진씨앤피

121-9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동 2102호(공덕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대표전화 02-563-4955

이메일 kiso@kiso.or.kr

◆ KISO 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ISO저널 13호의 본문은 ‘한겨레결체’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협력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권현영 교수(광운대 법학과)

김유항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박준석 팀장(Daum 고객센터기획팀)

이원태 박사(KISDI 미래융합연구실)

태해진 팀장(SK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

한중호 이사(Naver 정책실)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ISSN 2287-8866(Online)